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92
----------	----

제출연월일 : 2011.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평창군의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위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8~16조)
- 다.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23조)
- 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2011년 예산 기 확보(100,900천원)
-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2011.6.20~7.11(21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평창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이 평창군내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3조(평창군의 책무) 평창군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이해 교육과 홍보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직업교육 및 훈련
3.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을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배우자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실시
4.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교육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의료 서비스 지원
6.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교육 등 양육지원
7. 결혼이민자 중 모범가정을 선발하여 친정보내주기 항공료 등 소요경비 지원 사업
8.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공무원 교육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군수는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운영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건전한 가정을 영위하는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2.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등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업 운영
3. 방문교육사업(한글교육지도, 아동양육교육지도) 지원
4. 관련단체, 관공서 등과 네트워크 형성 체계 사업 추진
5. 다문화가족을 위한 홍보와 정보제공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후 사업추진 실적, 사업계획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재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시설 관리·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문화가족지원에 관련한 규정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문화가족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5조의 보조금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또는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건전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수탁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제14조의 자격기준에 의거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센터장과 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조직) 지원센터에는 자격을 갖춘 센터장 1명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종사자 2명을 두어야 한다.

제14조(센터장 및 종사자 자격기준) ①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련학과(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관련학과(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실무경력(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5년 이상인 자
4. 직영에 한하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②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가족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유사 자격요건(가족상담사를 제외한 상담사, 보육교사, 교원자격, 가정복지사)을 갖춘 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제15조(지원센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지원센터 운영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원센터 관리·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지원센터 지도감독)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지원센터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또는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운영사항 전반과 관련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제17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지정·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부군수, 다문화가족담당 실·과장 1명

2. 위촉직위원

가. 군의원 1명

나. 평창군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경찰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다. 평창군여성단체협의회 대표, 평창군보육시설연합회 대표

라. 다문화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마.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제18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사직을 하거나 사망,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군수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동수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수당 및 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표창)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개발 및 사업집행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현황	법인명 (단체명)		대 표 자		
	소재지				
	설립일자		설립근거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 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0.1.18>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

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